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이 계획안은 2003년 12월 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임진각관광지는 민통선 최북단지역에 위치한 국내 대표적인 안보관광지로서 세계 유일의 분단현장과 안보체험을 위하여 연간 219만명의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불거리와 즐길거리 등 관광소재가 미약한 실정임.
- 또한, 이산과 망향의 한을 달래고 통일을 염원하기 위한 행사 등 각종 행사가 연간 30회이상 치루어지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관광객들에게 불거리 제공을 위하여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통민속놀이 공연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대시설이 열악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임.
- 이에 야외공연장을 건립하여 관광객 유인과 대형 문화공연 및 행사를 적극 유치하고 시민화합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건물

- 위 치 :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1360-44(임진각관광지 주차장)
- 연 면 적 : 660㎡(약 200평)
- 재 산 액 : 1,100백만원(취득예정가격)
- 취득방법 : 신규취득(건물신축)
- 활용용도 : 야외 공연장
- 토지소유자 : 파주시장
-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3. 검토의견

- 동 변경안은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1360-44번지 임진강관광지 주차장 부지 내 약 200평 규모의 야외공연장을 신축(설치)하기 위하여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야외공연장은 사업비 1,100백만원(국도비포함)을 투자하여 공연무대 80평, 준비실 및 음향실 등 120평등 총 200평 규모의 시설로 신축될 계획임.
- 동 시설은 연간 20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는 임진각에 야외공연장을 설치하여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와 공연 등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인프라를 확충하여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것임.

- 현재 임진각 주변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대표적인 안보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볼거리와 먹을거리 등 관광소재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상황에서 야외공연장이라는 문화공간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됨.
- 야외공연장 건립을 통해 대형 문화공연과 전통민속놀이 공연, 각종 예술행사 등을 적극 유치할 경우 관광객들의 유인효과뿐만 아니라 관광 파주의 이미지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현재 야외공연장 건립부지가 임진각 주차장부지에 공연장 건립으로 줄어들게 되는 주차장의 추가적인 확보대책과 공연장 건립 이후의 효율적인 활용대책이 요구됨.

《地方財政法》

제77조 (公有財産의 管理計劃)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豫算을 編成하기 전에 매년 公有財産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計劃(이하 “管理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地方自治法》 [일부개정 2002.3.25 법률 제6669호]

第35條 (地方議會의 議決事項) ①地方議會는 다음 사항을 議決한다.<改正 1994·3·16, 1999.8.31>

6.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重要財産의 취득·처분

《坡州市公有財産管理條例》[2001. 10.10 조례 제410호]

제35조(公有財産 管理計劃) ①법제77조 및 영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